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9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11.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최윤정)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0호)
- 수수료액표에 제증명 종목 추가(안 별표 제1호거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 2023.7.6.)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별표](수수료액 표)에서는 제1호(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거목에 외국인 결핵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1,500원/1통) 항목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7월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장기등기증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 사증을 소지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경우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 대해 결핵진단서 제출이 2022년 12월부터 의무화 되었음.
 - 본 안건은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진료비 면제 대상자 및 제증명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1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제증명 종목 추가를 통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0호)
- 나. 수수료액표에 제증명 종목 추가(안 별표 제1호거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10. 5.~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별표에 제1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외국인 결핵확인서	1통	1,500원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① (생 략)</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u>」 제11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p>